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대 및 규제 합리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장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안 제2조 제1호)

- 방송접근권 보장 대상을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나. 시청점유율 적용 기준 명확화(안 제2조 제7호)

- 시청점유율 적용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 행정공백 방지 등을 위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이 되는 시청점유율을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조사·산정값으로 명확히 규정

다. 장애인방송 적용 대상 확대(안 제3조)

-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해 고시 적용 서비스를 방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포함

라. 장애인방송 사업자 지정기준 개선(안 제5조)

- 규제 합리성·예측성 제고를 위해 고시지정사업자 지정기준을 현행 ‘방송매출액 대비 장애인방송물 제작비 비중 1% 이하’에서 ‘방송매출액 150억원 이상’으로 변경

- 시청점유율이 높은 채널에서 장애인방송이 제공되도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기준을 현행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 이상에서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 이상으로 변경

마. KBS 채널별 최소 의무 편성비율 기준 신설 (안 제6조)

- 장애인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다채널 운영 필수 지정사업자인 KBS의 의무편성 비율을 현행 2개 채널 평균에서 채널별로 의무편성 비율의 80% 이상 편성하도록 개선

바. 주시청시간대 장애인방송 편성확대 노력 의무 신설(안 제7조의4)

- 장애인 시청편의 제고를 위해 주시청시간대(평일 19시-23시, 주말·공휴일 18시-23시)에 장애인방송 편성확대 노력 의무 신설

사.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 신설(안 제10조)

-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소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

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장애인방송 편성 노력 의무 신설(안 제15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을 자체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 의무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를 “제21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통한 미디어 복지 증진을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방송시청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전달하는”을 “통역하여 전달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방송매출액이란”을 “방송매출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방송법 제69조의2”를 “방송법 제35조의4”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 제3호”를 “제2조제3호”로 하고, “텔레비전 방송으로 한다”는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4항 중 “글자”를 “문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 중 “고시의무사업자”를 “고시지정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을 “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를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최근 3년 평균 방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만, 해당 종합유선 방송사업자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평균 방송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는 “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최근 3년 평균 방송 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업자

⑧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실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실적이 존재하는 연도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한 개”를 “2개”로 하고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는 당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평균 목표치로 간주한다”를 “제12조의 실적자료 제출 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치는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채널별로 화면해설방송 및 한국 수어방송은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의 80%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고시 의무사업자”는 “고시지정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6항을 삭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고시지정사업자가 2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제12조의 실적자료 제출 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에 따른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실적치는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의무채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을 경감 또는 유예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전체 또는 일부를 경감, 유예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장애인방송 시청보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기타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의

경감, 유예가 필요한” 으로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및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는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로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주시청시간 장애인 방송 편성확대)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주시청시간에 장애인방송 편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7호 중 “방법 마련” 을 “방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예외 인정여부 판단” 을 “예외인정 관련 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같은 조 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종전의 같은 조 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

⑥ 제3항제9호의 장애인방송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를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고시의무사업자” 를 “고시지정사업자” 로 하고, “연 2회” 를 “연 1회 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매년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결과 등을 포함하여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고시의무사업자” 는 “고시지정사업자” 로 한다.

제14조 “(소명절차)” 는 “(예외인정 절차)”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시의무사업자” 를 “고시지정사업자” 로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명 자료를 함께” 를 “관련 자료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소명의” 를 “관련자료 제출과 함께 사전소명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소명 기회 제공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사전

소명자료를”을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음성안내 및 장애인방송 편성여부,”는 “음성 및 문자로 장애인방송의 편성여부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서부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장애인방송 기능 강화로 시청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품질제고”는 “품질향상”으로 한다.

제16조 “2023년”은 “2026년”으로 한다.

[표2] 중 “고시의무사업자”를 “고시지정사업자”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본 고시는 「방송법」 제69조제8항 및 제9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에 따라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통한 미디어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방송 대상사업자, 편성비율 및 제공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방송"이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을 말한다. 2 ~ 4. (생략) 5. "한국수어방송"이란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5의2 (생략) 6. "방송매출액이란"이란 방송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 기타 방송사업수익 등의 합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 자료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방송"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방송시청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 등을 말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한국수어방송"이란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통역하여 전달하는 방송을 말한다. 5의2 (현행과 같음) 6. "방송매출액"이란 방송수신료수익, 광고수익, 협찬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 기타 방송사업수익 등의 합계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한 자료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7.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자료를 말한다.	7.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산정된 자료를 말한다.
8. (생략)	8.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의 적용범위는 「방송법」 제2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고시의 적용범위는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한다.
② 제1항의 텔레비전방송에서 광고방송은 제외한다.	② <삭 제>
제4조(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 ① ~ ③ (생략)	제4조(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장애인방송 유형표시 의무란 장애인방송물을 방송하거나 홈페이지에 방송프로그램 편성표를 게시하는 경우, 당해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글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④ 장애인방송 유형표시 의무란 장애인방송물을 방송하거나 홈페이지에 방송프로그램 편성표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문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제5조(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구분)	제5조(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구분)
①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로 구분한다.	①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지정사업자로 구분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③ <u>고시의무사업자</u>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중에서 법인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지정·공표하되, 방송환경 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한 제반 상황에 따라 매년 추가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기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u>고시의무사업자</u>를 지정·공표해야 한다. 1. 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 2. 방송매출액에서 장애인방송물 제작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 3. <신설> ⑤ 제3항제1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u>고시의무사업자</u>로 지정할 때,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u>고시지정사업자</u>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중에서 법인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지정·공표하되, 방송환경 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한 제반 상황에 따라 매년 추가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기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전년도 송출실적이 있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u>고시지정사업자</u>로 지정·공표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최근 3년 평균 방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업자(다만,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평균 방송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3.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최근 3년 평균 방송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인 사업자 ⑤ 제3항제1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u>고시지정사업자</u>로 지정할 때, 해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자로 간주한다.

현행	개정안
⑥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를 <u>고시의무사업자</u>로 지정할 경우 <u>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u> 이상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u>전년도 연평균 시청점유율 0.2%</u> 이상인 채널에 한해 적용한다. ⑦ 제3항에 의해 <u>고시의무사업자</u>로 지정되었으나 등록취소 또는 휴업·폐업 등으로 방송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신설>	⑥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를 <u>고시지정사업자</u>로 지정할 경우 <u>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u> 이상인 채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u>최근 3년 평균 시청점유율 0.3%</u> 이상인 채널에 한해 적용한다. ⑦ 제3항에 의해 <u>고시지정사업자</u>로 지정되었으나 등록취소 또는 휴업·폐업 등으로 방송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년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u>최근 3년 평균 실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실적이 존재하는 연도의 평균</u>으로 산정한다.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① ~ ② (생략) ③ 필수지정사업자가 <u>한 개</u>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u>장애인 방송 편성비율 목표치는 당해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평균 목표치로 간주한다.</u> ④ ~ ⑥ (생략)	제6조(필수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필수지정사업자가 <u>2개</u>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u>제12조의 실적 자료 제출 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치는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u> 다만, 이 경우 채널별로 화면해설방송 및 한국수어방송은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의 80%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7조(<u>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u>) ① <u>고시의무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u>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u>고시의무사업자</u>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중 <u>고시의무사업자</u>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 70%, 화면해설방송 5%, 한국수어방송 3%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3.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u>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에서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겸영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사전소명과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경감, 유예할 수 있다.</u>	제7조(<u>고시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u>) ① <u>고시지정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u>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 <u>고시지정사업자</u>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7%, 한국수어방송 4%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2.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중 <u>고시지정사업자</u>로 지정된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 70%, 화면해설방송 5%, 한국수어방송 3%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삭제</u>

현행	개정안
⑥ <u>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시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전 소명과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의 수요, 채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폐쇄자막, 한국수어, 화면해설방송 중 특정 방송유형에 대한 편성의무를 경감, 유예할 수 있다.</u> ⑦ <신설>	⑥ 삭제 ⑦ <u>고시지정사업자가 2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 제12조의 실적 자료 제출 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에 따른 장애인방송 편성비율 실적치는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의무채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u>
제7조의2(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및 유예) ① <u>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을 경감 또는 유예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u> 1. ~ 3. (생략) 4. <u>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u> ② <u>제1항의 경우 방송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 및 장애인방</u>	제7조의2(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및 유예) ① <u>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의 전체 또는 일부를 경감 또는 유예할 수 있다.</u> 1. ~ 3. (현행과 같음) 4. <u>기타 장애인방송 제작여건, 시청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방송 시청보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u> ② <u>제1항에 따른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의 경감, 유예가 필요한 방송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및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를 포</u>

현행	개정안
송시청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함한다)를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4 <신설>	제7조의4(주시청시간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주시청시간에 장애인방송 편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1.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마련 2.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3.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 준수여부 평가 4.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예외 인정여부 판단 5. 장애인방송물 평균제작비 산정 및 공표 6.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등의 조정 7.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평가결과 공표기준 및 방법 마련 8.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9. <신설> 9. 기타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	제10조(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할 수 있다. 1.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예외인정 관련 사항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평가결과 공표기준 및 방법 8. (현행과 같음) 9. 장애인방송 품질향상 관련 사항 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0.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임한 업무 ④ ~ ⑤ (생략) ⑥ <신 설>	11.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제9호의 장애인방송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필수지정사업자와 <u>고시의무사업자</u>의 장애인방송물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평가를 연 2회 실시해야 한다. ② <신설>	제11조(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 ①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필수지정사업자와 <u>고시지정사업자</u>의 장애인방송물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매년 장애인방송 편성실적 결과 등을 포함하여 우수 사업자를 선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실적자료 제출) ① 필수지정사업자와 <u>고시의무사업자</u>는 장애인방송물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실적자료 제출) ① 필수지정사업자와 <u>고시지정사업자</u>는 장애인방송물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 이행에 따른 실적자료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소명절차) ① 필수지정사업자와 <u>고시의무사업자</u>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실적자료 제출 시, 실적산정 예외인정 <u>프로그램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u>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전소명이 필요한 사업자의	제14조(예외인정 절차) ① 필수지정사업자와 <u>고시지정사업자</u>는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실적자료 제출 시, 실적산정 예외인정 <u>관련 자료를</u> 제출할 수 있다. ② 사전소명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

현행	개정안
경우, 실적자료 제출에 앞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u>사전소명의 기회</u>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u>사전소명기회</u> 제공 요청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사전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우, 실적자료 제출에 앞서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에 <u>관련자료 제출과 함께 사전소명의 기회</u>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장애인방송시청보장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장애인방송 시청편의 제고) ① (생략) ②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텔레비전수상기 제조사는 전자프로그램가이드(Electronic Program Guide, EPG)에서 <u>음성안내 및 장애인방송 편성여부, 편성유형 제공 등 장애인방송 시청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u>해야 한다. ③ (생략) ④ <신설>	제15조(장애인방송 시청편의 제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텔레비전수상기 제조사는 전자프로그램가이드(Electronic Program Guide, EPG)에서 <u>음성 및 문자로 장애인방송의 편성여부와 편성유형 제공 등 장애인방송 시청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u>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 부가통신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영상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신설>	⑤ 제1항에서부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장애인방송 기능 강화로 시청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u>품질제고</u> 및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기본 사항 등에 관한 가	제15조의2(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u>품질향상</u> 및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기본 사항 등에 관한 가이

현행	개정안
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3년</u>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6년</u>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2] <u>고시의무사업자</u>	[표2] <u>고시지정사업자</u>